

제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단69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문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5.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제주시 AD 전 1,395㎡에 대하여,

가. 별지 표 중 ‘피고’란 기재 피고 14 내지 28은 ‘AE측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게 ‘AE측에게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0. 9. 9. 접수 제43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표 중 ‘피고’란 기재 피고 1 내지 13은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R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송현경

청 구 원 인

1. 명의신탁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AE 소유인데, 원고가 1970. 6. 10. 매수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농지법 제6조¹⁾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1980. 9. 9. 편의상 원고 지파 대표인 AF, A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F 지분(1/2)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후 2016. 12. 21.경 원고 문중회 전직 회장이자 지파 대표인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AG 지분(1/2)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AG 지분(1/2)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농지법 등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는 AE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AG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AG 지분(1/2)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AE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1/2)에 관하여 197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E의 상속관계

AE가 1995. 12. 12.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자녀들인 망 AI, 피고 G, 망 AJ이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씩 상속하였습니다.²⁾

그런데 AI이 1973. 8. 12. AE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AI의 지분(1/3)은 처 AK과 자녀들인 피고 B, C, E, F, D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다가 AK마저 2018. 3. 8. 사망

1)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AE의 남편 AL은 1938. 10. 8. 사망하고, 자녀 AM은 1954. 5. 10. 미혼인 채로 사망함으로써 AE의 재산을 각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그녀의 지분을 위 피고들이 공동상속하게 됨으로써, 결국 망 AI의 지분은 위 피고들이 각 $1/15(1/5 \times 1/3)$ 지분씩 상속하였습니다.³⁾

또한, AJ이 1990. 4. 23. AE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지분(1/3)은 남편인 피고 H이 $3/33(3/11 \times 1/3)$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I, AN, J, K이 각 $2/33(2/11 \times 1/3)$ 지분씩 각 대습상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AN마저 2018. 10. 19. 사망함으로써 그의 지분(2/33)은 처인 피고 L이 $6/231(2/33 \times 3/7)$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M, N이 각 $4/231(2/33 \times 2/7)$ 지분을 각 대습상속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E의 지분은 피고 B, C, D, E, F이 각 $1/15(=77/1,155)$ 지분을, 피고 G이 $1/3(=385/1,155)$ 지분을, 피고 H이 $3/33(=105/1,155)$ 지분을, 피고 I, J, K이 각 $2/33(=70/1,155)$ 지분을, 피고 L이 $6/231(=30/1,155)$ 지분을, 피고 M, N이 각 $4/231(=20/1,155)$ 지분을 각 상속하거나 대습상속 하였습니다.

3. AG의 상속관계

우선 AG가 1997. 8. 15. 사망함으로써 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1/2)은 처인 망 AO과, 자녀들인 피고 O, 망 AP, 피고 P, Q, 망 AQ, 피고 R, S가 공동상속 하였다가 AO마저 2010. 9. 20.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O, 망 AP, 피고 P, Q, 망 AQ, 피고 R, S가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G의 지분(1/2)은 피고 O, 망 AP, 피고 P, Q, 망 AQ, 피고 R, S가 각 $1/14(1/7 \times 1/2)$ 지분씩 상속하였습니다.

한편, AP이 2019. 6. 9. 사망함으로써 그의 지분(1/14)은 자녀들인 피고 T, U, V, W

3) AI의 2남 AR은 미혼인 채로 1965. 7. 20. 사망하였으므로 대습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각 $1/56(1/14 \times 1/4)$ 지분씩 상속하였습니다.

또한, AQ이 1999. 7. 7.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지분($1/14$)은 남편인 피고 X이 $3/126(1/14 \times 3/9)$ 지분, 자녀들인 망 AS, 피고 Y, Z가 각 $2/126(1/14 \times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S마저 2018. 12. 23. 사망함으로써 그의 지분($2/126$)은 처인 피고 AA가 $6/882(2/126 \times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AB, AC이 각 $4/882(2/126 \times 2/7)$ 지분을 상속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Q의 지분은 피고 X에게 $21/882(=3/126)$ 지분, 피고 Y, Z에게 각 $14/882(=2/126)$ 지분, 피고 AA에게 $6/882$ 지분, 피고 AB, AC에게 각 $4/882$ 지분씩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O, P, Q, R, S가 각 $252/3,528(=1/14)$ 지분, 피고 T, U, V, W이 각 $63/3,528(=1/56)$ 지분, 피고 X이 $84/3,528(=21/882)$ 지분, 피고 Y, Z가 각 $56/3,528(=14/882)$ 지분, 피고 AA가 $24/3,528(=6/882)$ 지분, 피고 AB, AC이 각 $16/3,528(=4/882)$ 지분을 상속받거나 대습상속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E측 피고들의 상속지분, AG측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토대로 AG측 피고들이 AE측 피고들에게 이전하여야 할 각 지분, AE측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각 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지 표 '피고'란 기재 피고 14 내지 28은 별지 표 'AE 측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표 'AE측에게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0. 9. 9. 접수 제43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표 '피고'란 기재 피고 1 내지 1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표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⁵⁾에 관

4) 이를 모두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합니다.

5) 이를 모두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합니다.

하여 197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지]

< 표 >

피 고		상속지분	AE측 피고	AE측 피고에게 이전할 지분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		
1. B	A E 상 속 인	각 77/1155			각 135,828/4,074,840		
2. C							
3. D							
4. E		385/1155			679,140/4,074,840		
5. F							
6. G							
7. H		105/1155			185,220/4,074,840		
8. I		각 70/1155					각 123,480/4,074,840
9. J							
10. K							
11. L		30/1155			52,920/4,074,840		
12. M		각			각 35,280/4,074,840		
13. N	20/1155						
14. O	A G 각 252/3528 상 속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19,404/4,074,840			
15. P			피고 6	각 97,020/4,074,840			
16. Q			피고 7	각 26,460/4,074,840			
17. R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17,640/4,074,840			
18. S			피고 11	7,560/4,074,840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5,040/4,074,840			

19. T	인	각 63/3528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4,851/4,074,840	
20. U			피고 6	각 24,255/4,074,840	
21. V			피고 7	각 6,615/4,074,840	
22. W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4,410/4,074,840	
			피고 11	1,890/4,074,840	
23. X		84/3528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1,260/4,074,840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6,468/4,074,840	
			피고 6	32,340/4,074,840	
			피고 7	8,820/4,074,840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5,880/4,074,840	
24. Y 25. Z		각 56/3528	피고 11	2,520/4,074,840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1,680/4,074,840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4,312/4,074,840	
			피고 6	각 21,560/4,074,840	
			피고 7	각 5,880/4,074,840	
26. AA		24/3528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3,920/4,074,840	
			피고 11	1,680/4,074,840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1,120/4,074,840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1,848/4,074,840	
			피고 6	9,240/4,074,840	
				피고 7	2,520/4,074,840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1,680/4,074,840
				피고 11	720/4,074,840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480/4,074,840

27. AB 28. AC	각 16/3528	피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5 별로 각각 1,232/4,074,840	
		피고 6	각 6,160/4,074,840	
		피고 7	각 1,680/4,074,840	
		피고 8 내지 10	피고 8 내지 10 별로 각각 1,120/4,074,840	
		피고 11	480/4,074,840	
		피고 12, 13	피고 12, 13 별로 각각 320/4,074,840	